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미탑승 항공권 미반환 사용료 등 공항계정 세입에 추가 >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45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2202745)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미탑승 항공권 미반환 사용료 등 공항계정 세입에 추가 (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3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220274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08. 12.
3. 회 부 일 : 2024. 0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에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항공기 미탑승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기간을 도과한 미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가 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위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7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미탑승 항공권 미반환 사용료 등 공항계정 세입에 추가(안 제6조 제1항제1호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u><신설></u>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4.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 1. (현행과 같음) <u>1의2. 「공항시설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u> 2. ~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책사업 관련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분양대금 5. 제2항제2호에 따른 용자로 인한 수입금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7.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그 밖의 수입금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¹⁾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²⁾가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1) 「공항시설법」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제29조(비행장시설관리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소유의 비행장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비행장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비행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사용료에는 여객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내야 하는 ‘여객공항사용료³⁾’가 포함되어 있음.

여객공항사용료의 징수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⁴⁾에 따라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⁵⁾가 대행할 수 있으며, 항공운

장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비행장시설관리권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시설”은 “비행장시설”로, “공항시설관리권”은 “비행장시설관리권”으로,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는 “비행장시설관리권 등록부”로 본다.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항공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 받은 자를 말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사업

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사용료의 종류

라. 여객공항사용료

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공항시설법」에 따른 사용료를 합산하도록 하고있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6)에 따라 현재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권 가격에 여객 공항사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여객공항사용료는 비행기를 놓치는 등 공항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지나쳐,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5년간 169억원 이상의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항공사별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2020~2024.8.) 】

(단위 : 백만원)

계	대한 항공	아시 아나	제주 항공	진에어	에어 부산	티웨이 항공	이스타 항공	에어 서울	에어로 케이
16,976	4,550 (추정치)	3,467 (추정치)	2,114	1,266	1,392	3,349	334	369	135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는 자료 미제출로 개략적으로 추정한 수치임.

자료 : 국토교통부

6)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6.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이에 지난 2023년·2024년 국정감사 당시 적극적으로 환불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취지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제2202744호, 2024.08.12.)」(이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세부내용 참고 참조).

첫째, 현행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해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개정하려는 것임.

둘째, 현재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행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셋째, 안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항공권 구매와 같이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였으나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예정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러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의 근거를 신설하고,

이러한 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넷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용료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

다섯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관리·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반환 사용료의 국가 귀속과 관련해서는 해당 개정안의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반환 사용료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에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동 개정안과 같이 이를 공항계정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률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과 같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하위법령 개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의 시행일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에 맞춰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법 개정의 취지는 미사용 여객공항사용료가 다시 국민에게 반환(시효 소멸시 국고귀속)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시효가 소멸된 여객공항사용료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이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항공사가 납부하는 착륙료 등 의도하지 않은 사용료에 대해서도 국고 귀속이 가능해지는바, 법 개정의 목적에 맞게 국고 귀속 대상 사용료를 ‘여객공항사용료’로 한정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제2202744호, 2024.08.12. 발의)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u>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u> 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 ----- -- <u>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u> ----- -----, 이 경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항공권을 판매하는 자로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항공권판매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사용료의 반환청구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u>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예정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항공권판매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서 같다)에게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u>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u>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은 <u>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예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이하 “공항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된다.</u> ③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해당 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용료를 공항계정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출입·검사 등) ① ----- ----- -----<u>항공관련</u> 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u>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u>

현행	개정안
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② · ③ (생략)	<u>하는 항공권판매자</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과태료) ①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소 <u>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해당 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 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 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u>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예정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미반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10년 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사용료(이하 “미반환 사용료”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미반환 사용료를 징수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했던 자에게 반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